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한글
대한민국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안) 의견조회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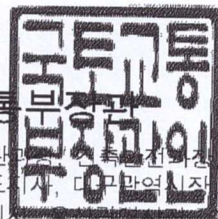
2.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9.16.(수)까지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매뉴얼(안)	검토(안)	사 유	비 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불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매뉴얼(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녹색건축과장, 건축문화경관과장, 건축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귀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귀하, 한국건축시공기술사회 귀하

시설사무관 최종화 건축정책과장 김성호
전결 2020.9.9.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7538 (2020. 9. 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http://www.molit.go.kr>전화번호 044-201-4750 팩스번호 044-201-5574 / hwa123@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